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0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수산물질병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산물방역관의 자격기준으로 학력기준을 추가하고,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수산물질병 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수산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(안 제5조)

- 1) 수산물방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
- 2) 수산물방역관의 학력과 경력기준을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
- 3) 수산물방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물방역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

나. 수산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 정비(안 제13조)

- 1) 수산물검역관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학력기준을 정

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

- 2) 수산생물검역관이 되기 위한 경력 기준으로 관련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하고,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였던 학력요건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한편, 어병(魚病)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로 명확히 함
- 3)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경력과 학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방역과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

다. 검역시행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(안 제15조)

- 1) 검역시행장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하던 것을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 변경함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
- 2) 검역이 실시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용어사용의 혼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

라.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권한의 위임(안 제19조)

- 1)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위임

하고, 수산 시험·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와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때 실시하여야 하는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

2)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수산생물질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해 수입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위촉되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)”을 “(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”을 “위촉 또는 임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
제13조의 제목 “(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)”을 “(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”을 “위촉 또는 임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6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가진 사람”을 “가진 사람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어병(魚病) 관련”을 “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”를 “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검역장소”를 “검역시행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2항 중 “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”를 “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수입허가”를 “수입허가 및 사후관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법 제37조”를 “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2의2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
구축·운영

2의3.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산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산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위촉되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) ① (생략)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위촉 또는 임명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제13조(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) ① (생략)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	제13조(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위촉 또는 임명----- ----- ----- -----

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
1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

3. 어병(魚病)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
제15조(검역관리인의 임무 등) ①
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(이하 “검역관리인”이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2. (생 략)

3.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

-----.

1. -----

----- 1년 -----

2. -----

----- 가
진 사람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
3.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사 -----

제15조(검역관리인의 임무 등) ①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

사항 4. (생 략) 5. <u>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</u> 6. (생 략)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</u>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1. 삭 제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3. ~ 13. (생 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	--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</u> ----- 6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</u> ----- -----. 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.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 <u>2의3.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</u> 3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--	---

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----- ----- -----.
1.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·연구조사 또는 수산물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<u>수입허가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입허가 및 사후관리</u>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법 제37조</u> 에 따른 수입위험분석	6. <u>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제4항</u> ----- --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22